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9.

발 의 자 : 권향엽 · 김용만 · 정진욱
진성준 · 이수진 · 허성무
어기구 · 곽상언 · 강준현
문금주 · 백승아 · 이주희
소병훈 · 손 술 · 오세희
박희승 · 박선원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다수의 법률은 ‘성적 수치심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,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·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,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·공포·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.

이와 관련하여,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‘성적 수치심’이라는 용어를 ‘성적 불쾌감’으로 변경한 바 있음.

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‘수치심’이라는 표현을 ‘불쾌감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).

법률 제 호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“수치심”을 “불쾌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의2(대부계약의 효력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. 이 경우 대부업자,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대부제공자”라 한다)은 제8조,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,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	제8조의2(대부계약의 효력) ① 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·영상물·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·수집·	가. -----불쾌감-- ----- ----- ----- -----

제공 · 유통하는 행위 나. (생략) 2. ~ 4. (생략) ② (생략)	----- 나. (현행과 같음)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